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1. 7 선고 2024가단11627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A

변론 종결2024. 10. 17.

판결 선고2024. 11. 7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. 9. 10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,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C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B에 대하여 2009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12,760,390원 채권을 갖고 있다. 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20. 9. 10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하였다.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위 주식을 양도하고, 위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박민수

별지